

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순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4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5월 27일

발 의 자 :박순규 의원(1명)

찬 성 자 :권수정, 김경영, 김제리,
김태수, 김평남, 김희걸,
박기재, 박상구, 송도호,
송명화, 송아량, 송정빈,
신정호, 양민규, 이성배,
이영실, 이태성, 임종국,
장상기, 전석기, 최 선,
최웅식, 홍성룡, 황규복
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- 2011년 3월 제정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은 개인정보의 수집·유출·오용·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(제24조의2제1항제1호~3호)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별지(변상금 사전통지서)는 해당되지 않음.
- 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 별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타 시·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음. 서울 시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지 서식의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대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별지 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서의 대상자란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 함. (별지 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서의 대상자란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	개정안	
[별지 서식]		[별지 서식]	
<u>변상금 사전 통지서</u>		<u>변상금 사전 통지서</u>	
대상자	① 성명		② 주민등록 번호
	③ 주소		④ 전화번호
이하 생략		이하 생략	